

창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나62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환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4.

제 1 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10260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과 같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58,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5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09. 10. 16.경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D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연체하였고, (주)D은 2014. 9. 25.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1. 'C는 원고에게 20,555,228원 및 그중13,299,344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16475). 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아버지인 망 F은 2018. 11. 6.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과 같은 목록 제1, 2, 4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C는 망 F의 재산에 대하여 2/11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C를 비롯한 망F의 상속인들은

2018. 12. 27. 위 각 부동산을 모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과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원인은 2018. 1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1.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등기원인은 2018. 1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같은 날 다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원인은 2018. 12. 27.자 증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채무자인 C가 망 F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7.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2/11)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수익자인 피고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해당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458,920원이다. 위 부동산중 2/11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458,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45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인 C는 2019. 5. 22. 원고의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9. 6. 3.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2019하단10400)을 하였고, 2019. 8. 16. 면책결정(2019하면10400)을 하였던 사실,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위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7. 기각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20하기6)이 인정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양수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규정된면책제외대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대상이 된 양수금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판사 김민정, 판사 최진숙

별지

부동산 목록

1. 창원시 마산회원구 K 대 122.4㎡
2.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2.25㎡, 2층 53.73㎡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부속건물 1층 1.0㎡, 2층 1.0㎡
3.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도로 14.5㎡
4. 밀양시 M 입야 1043㎡. 끝.